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,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1,152에서 1만분의 1,227로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1,152”을 “1,227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장기요양보험료율) 법 제9 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료율은 1만분의 <u>1,152</u> 로 한다.	제4조(장기요양보험료율) ----- ----- ----- <u>1,227</u> -----.